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43 2014년 9월 24일 교 육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14년 9월 1일, 김창수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

(2014년 9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창수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○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연주)

- 동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기위한 것임.
- 안 제4조제2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,
-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야 종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음.
- 다만, 현재 22개의 정책자문위원회 중 활동 및 개최 실적이 저조 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 바, 이를 조정 또는 폐지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임.
- 이 밖에 교육지원청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, 2013년 12월 30일

개정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2014년 6월 11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기존의 "지역교육청"이 "교육지원청"으로 명칭이 변경되고, "강동교육지원청"이 "강동 송파교육지원청"으로, "동작교육지원청"이 "동작관악교육지원청" 으로, "성동교육지원청"이 "성동광진교육지원청"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사항임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(생략)
- 5. 토론 요지 : (생략)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- 7. 수정안의 **요**지 : 없음.
- 8. **심사결과**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창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43

발의년월일: 2014년 9월 1일 발 의 자: 김창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문수,한명희,유 용,

김선갑,서영진,조규영, 양준욱,김진철,이행자, 김제리,진두생,김왕석(서초),

김정태,김상훈(14명)

## 1. 제안이유

○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, 상위법 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함(안 제4조).

나.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함(안 별표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및 별표 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#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자 중 1명은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"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"을 "의장이 추천한 시의원"으로 한다.

별표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"서울강동교육 발전자문위원회" 및 "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"을 "서울강동송 파교육발전자문위원회" 및 "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"로 하 며, "서울동작교육발전자문위원회" 및 "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 청"을 "서울동작관악교육발전자문위원회" 및 "서울특별시동작관 악교육지원청"으로 하고, "서울성동교육발전자문위원회" 및 "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"을 "서울성동광진교육발전자문위원회" 및 "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# 제4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〈단서 신설〉

혀 햇

- 1.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
- 2.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 2.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 하 자
- 3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3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추천한 교육위원
- 4.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.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#### [별표]

칭(제2조제2항 관련)

번호	명칭	해당 <u>지역교육청</u>
1	서울동부교육발	서울특별시동부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2	서울서부교육발	서울특별시서부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3	서울남부교육발	서울특별시남부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4	서울북부교육발	서울특별시북부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5	서울중부교육발	서울특별시중부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6	<u>서울강동교육발</u>	서울특별시강동
6	<u>전자문위원회</u>	교육지원청
7	서울강서교육발	서울특별시강서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8	서울강남교육발	서울특별시강남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
#### 개정안

제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- 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 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 다 만,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자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
  - 한 자

  - 자

#### [별표]

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명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명 칭(제2조제2항 관련)

번호	명칭	해당 교육지원청
1	서울동부교육발전	서울특별시동부
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2	서울서부교육발전	서울특별시서부
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3	서울남부교육발전	서울특별시남부
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4	서울북부교육발전	서울특별시북부
4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5	서울중부교육발전	서울특별시중부
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6	서울강동송파교육	서울특별시강동
	발전자문위원회	<u>송파교육지원청</u>
7	서울강서교육발전	서울특별시강서
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8	서울강남교육발전	서울특별시강남
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
9	서울동작교육발	서울특별시동작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10	서울성동교육발	서울특별시성동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11	서울성북교육발	서울특별시성북
	전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

9	서울동작관악교육	서울특별시동작
	발전자문위원회	관악교육지원청
10	서울성동광진교육	서울특별시성동
	발전자문위원회	광진교육지원청
11	서울성북교육발전	서울특별시성북
	자문위원회	교육지원청